

제180회 구의회 임시회

2014. 2. 5 ~ 2.12

교육·복지·사람 중심



2014년 주요업무 보고



자동차관리과

보고 순서

I . 일 반 현 황	••• 1
II . 2014 주요업무 계획	•••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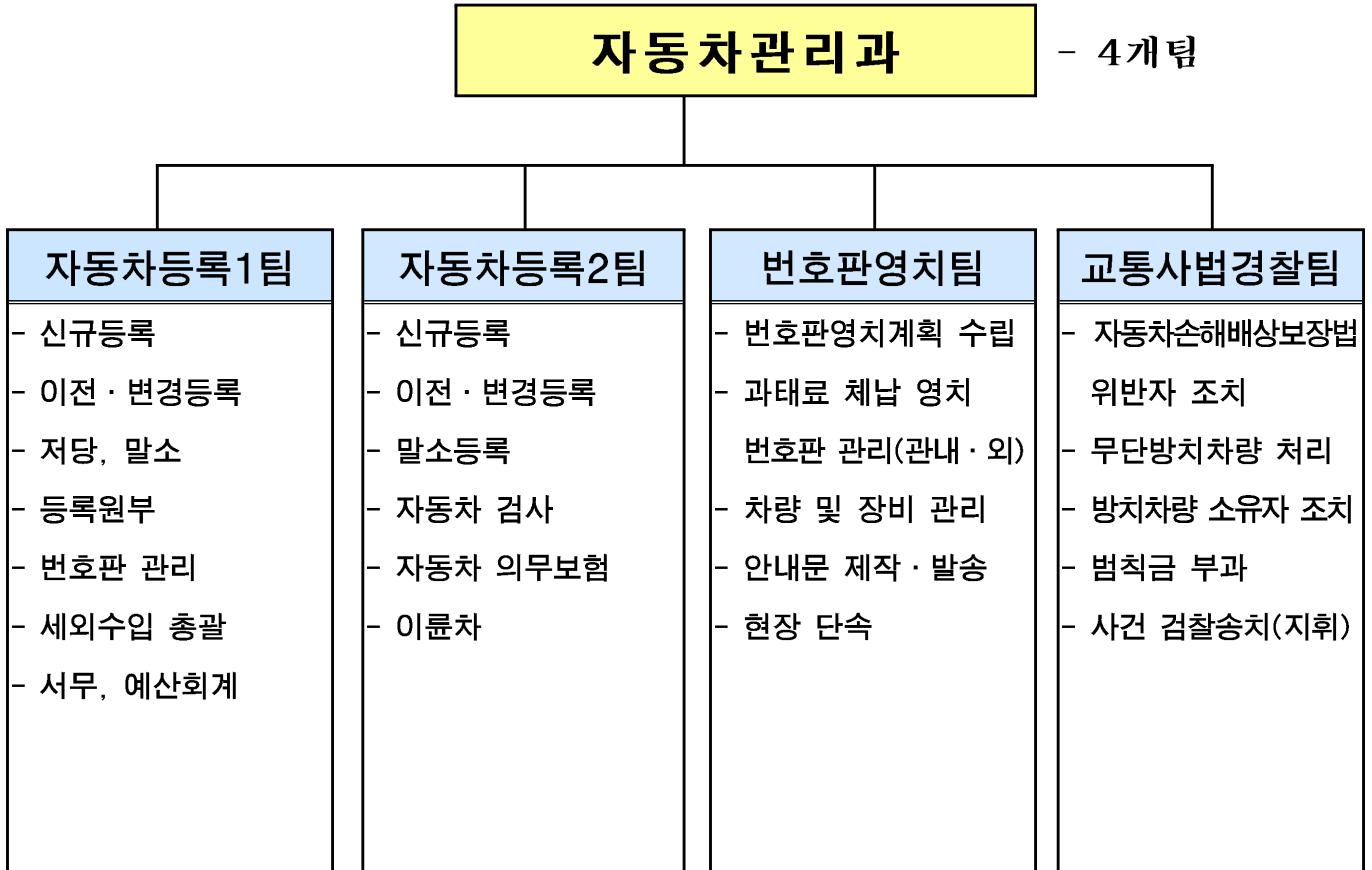
I. 일 반 현 황

1

조 직

자동차관리과

- 4개팀



2

인 력

구 분	계	일 반 직(임기제 포함)						대체 인력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
정 원	23	-	1	4	7	8	3	
현 원	23	-	1	6	9	5	2	2
과부족	-	-	-	2	2	△3	△1	-

3

자동차등록 및 장비현황

□ 자동차 등록 현황

2013.12.31 기준

계	승용차	승합차	화물차	특수자동차	이륜자동차
154,611	106,969	6,941	22,701	558	17,442

□ 자동차 등록 관련 장비 현황

계	인증기	복사기	프린터(칼라)	팩스	스캔	컴퓨터	봉합기
49	4	2	10(1)	3	1	28	1

□ 단속 장비 현황

계	차량	차량번호판독기	차량 네비게이션
4	2	1	1

4

예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단위사업명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(△)감
계	392,833	372,499	20,334
자동차관리의 적법 운영	38,434	29,984	8,450
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	55,318	132,128	△76,810
법규 위반자 처리	14,328	0	14,328
기본경비	284,753	210,387	74,366

Ⅱ . 2014 주요업무 계획

연 번	사 업 명	쪽
-----	-------	---

- ①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 서비스 4
- ②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5
- ③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처리 6

적법한 자동차 관리를 통하여 교통문화 정착 및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
준법정신을 고취시켜 선진 자동차 문화를 구현하고자 함.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1. 1 ~ 12.31
- 사업내용
 - 자동차 신규·이전·변경·말소 등록
 -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·말소
 -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
 - 자동차 압류등록 및 해제
 - 자동차 번호판 부착 및 봉인
 - 자동차 검사, 의무보험 및 상속이전 지연 과태료 부과

□ 추진방향

-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공
- one-stop 민원처리로 민원불편 해소
- 각종 신고서식 및 신고처리 방법 등 홈페이지 게재 민원편의 제공

□ 추진계획

-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민원처리 통합 창구 운영
- 자동차 검사, 의무보험 가입 및 상속 이전등록 사전안내
- 불법 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접수창구 운영
 - 대상 : 차량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, 실제 타인이 운행하여 과태료 미납, 세금체납, 압류 등으로 불편을 겪는 자
 - 신청자격 : 차량소유자 본인 또는 대리인(위임장 지참)

□ 예산액 : 비예산

자동차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과태료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 미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1. 1 ~ 12.31
- 사업대상
 - 2011. 7.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이후 발생 과태료 체납자
 - 세목별 체납액 30만원 이상,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한 경우
- 추진근거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(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)

□ 추진방향

- 영치대상 차량 안내문 발송으로 민원 사전 예방
-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질서위반행위 근절
- 과태료 상습 체납자 중점 관리 과태료 징수율 제고

□ 추진계획

-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선정을 통한 사전 안내문 발송
 - 번호판 영치 10일 전 사전 안내문 발송
- 3인 1개조 편성 현장 단속을 통한 체납 차량 운행 제한
- 영치 차량의 번호판 관리 및 과태료 징수
 - 과태료 체납액 완납시 번호판 반납
 - 의무보험 가입 여부 및 검사 필 여부 확인 후 번호판 반납

□ 예산액 : 55,318천원 - 구비 100%
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(운행의 금지)를 위반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위반자와 자동차관리법 제26조(자동차의 강제처리)를 위반한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 건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.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1. 1 ~ 12.31
- 사업대상
 -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처벌
 - 자동차를 무단 방치한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 처벌

□ 추진방향

-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규 적용으로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
-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 대한 철저한 법규 이행으로 준법정신 고취
- 자동차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업무로 행정의 신뢰감 고취

□ 추진계획

-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위반자(누적분) 중 공소시효 도래자 우선 처리
 - 2010년 이전 발생 미처리건(2015년 공소시효 만료) : 285대
-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제한 강화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
- 방치차량 신고 접수 즉시 차량 소유자 확인 자진 처리 유도
- 불출석자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소재수사 강화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

□ 예산액 : 14,328천원 - 구비 100%